

유틸리티

Overweight
(Main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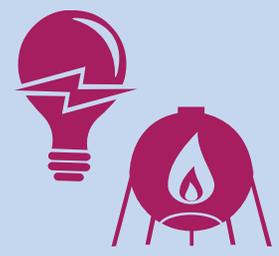
2017. 6. 5

사회적 가치 실현과 요금정책

대통령 통치철학이 담길 새 정부 요금정책 목표는 사회적 가치 실천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환경, 미래세대, 공동체 발전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예상된다.

공익성이 강화되고 경제적 불평등 완화, 환경 개선을 유도할 요금제도와 에너지 세제로의 수정이 예상된다. 정책수립, 운영, 평가에도 민간 참여가 확대되어 투명성과 안정성 개선이 예상된다.

관련 법안의 입법, 민간 참여 확대 등의 이벤트를 통해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반영될 경우 긍정적 시각 변화 가능성이 높다.



유틸리티/태양광
Analyst 김상구
02) 3787-4764
sangku@kiwoom.com

Contents



I. INVESTMENT SUMMARY 3

> 대통령 통치 철학 반영, 투명성 및 안정성 개선 전망 3

II. 대통령의 공공기관 운영

철학과 영향 4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5

> 공공요금, 공공서비스, 전기요금정상화 6

III. 국민 관심 1순위, 깨끗한

에너지 정책 11

IV. 공공요금, 에너지 세제

수정 가능성 12

> 낮은 요금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 12

> 에너지세제 17

V. 대기오염물질 감축 19

>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19

VI. 관련법안 21

기업분석 27

> 한국전력 BUY(Maintain) (015760) /TP: 56,000원

> 한국가스공사 Outperform(Upgrade) (036460) /TP 58,000원

> 한전기술 Marketperform(Maintain) (052690) /TP 26,000원

- 당사는 6월 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요금정책

>>> 대통령의 통치철학 반영, 긍정적

새 정부의 에너지, 환경 정책에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며 유틸리티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대통령이 발의했던 법률안과 공약에 근거할 때 공공기관 운영 방향은 경제 효율성뿐 아니라 환경, 미래세대,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수립과 운영 및 평가과정에도 민간 참여 확대가 예상되며 투명성과 안정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 사회적 가치 실현, 요금제도 수정 전망

국민 관심과 대선 공약,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일치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 수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 요금제도는 낮은 요금 수준과 용도간 요금격차로 불평등, 양극화,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유지하기 어려운 요금제도로 판단한다.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요금제도 및 에너지 세제로 수정이 예상된다. 산업용 요금인상,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한다.

>>> 공공정책 변화에 대비할 시점

에너지 정책의 공익성 강화 시 소폭의 투자보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과 무관한 산업 및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는 불평등 완화, 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유도할 기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정책 변화 시점도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 공공기관 운영 철학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운영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안의 입법 혹은 민간의 정책 참여 확대 등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부합하는 이벤트 발생 시 모멘텀 확대가 예상된다.

I. Investment Summary

>>> 대통령 통치 철학 반영, 투명성 및 안정성 개선 전망

석탄화력 가동 축소, 비정규직 대책 등으로 예상되는 비용 증가, 공공성 강화에 따른 공기업 수익 축소 우려 등으로 유틸리티 모멘텀이 약화되었다. 촉박한 정권 교체 과정으로 에너지와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이하 문재인법) 대선 공약을 통해 향후 정책 운영 철학과 공기업 운영에 대한 방향성 확인이 가능하며 **결론적으로 이번 정권 교체는 유틸리티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철학은 한마디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공공성이 강화되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 에너지 효율화, 환경 비용의 부과, 에너지 세제 보완, 민간 참여 확대로 원가와 투자보수, 정책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용 요금 인상과 연동제 시행 가능성도 높다.

공공성 강화 시 약 10% 안팎의 투자보수 감소 가능성이 상존하는 반면 공공 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 투명성 개선은 유틸리티 기업 밸류에이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전 정권에서 시작된 전력과 가스 시장개방과 개혁 움직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성 강화가 비효율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개방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 취해진 변화이자 신재생 확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을 통해 전력과 가스산업에 존재하는 비효율이 축소, 서비스 원가가 하락할 경우 사회적 가치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의 수정 혹은 반영 시점으로 판단한다.

우리 전망에 부합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유틸리티 산업에 대한 시각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당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입법화 등이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야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도 여당의 발의안과 공통분모가 많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의 입법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민간의 공공정책 참여 확대도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혹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전후하여 민간이 참여한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며 투명성 개선과 안정성 강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법은 공공기관 운영뿐 아니라 경제 정책 운영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 혹은 정책 반영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정책 변화에 대비할 시점으로 판단한다. 중장기 관점의 비중확대를 권고한다. Top Pick은 대표 공기업이자 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전력이다.

II. 대통령의 공공기관 운영 철학과 영향

정권 교체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통치 철학, 가치관 등 기본 운영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2014년 6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이를 통해 향후 공공기관 운영방향과 공기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법은 대선 공약과 일치되는 부분 혹은 공약 간 빈 고리를 연결해주는 내용이 담겨있고, 대선 이후 공약이행 내용이 발의안과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책 수행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제출된 발의안은 입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정확한 배경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의 문제라기 보다, 국정 전반을 포괄하는 통치 철학, 가치체계 등 폭 넓은 영역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 특정 분과에서 다루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법은 지난 해 같은 이름의 발의안(의안번호 1624)과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1614)으로 확대 보강되어 발의된 상태이다. 바른정당도 지난 해 유사한 내용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안번호 2616)을 발의하였다. 여당과 야당에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법률안 채택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의 한계를 초래함. 공공기관 운영은 경제적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담고 있는 문재인법은 어떤 방식으로 든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반영 시 불평등 완화, 요금제도 변화, 정책운영 투명성 개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 공공기관 운영뿐 아니라 경제 정책 운영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 혹은 정책 반영 시점이 그리 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수정 시 가장 민감하게 논의될 내용은

- 1) 공공성과 무관한 산업용 및 일반용 요금 수준의 적정성
- 2) 낮은 요금과 적절한 요금 중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합한 수준
- 3) 대·중소기업 상생, 불평등 완화와 경제적 이익의 순환, 사회적 비용 배분에 적합한 요금과 세제

등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유틸리티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분석하며 이유는 순서대로 후술한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주요 내용

문재인의원 대표발의, 2014.6.17, 의안번호 10886

제안이유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음.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임.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운영원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 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로 설정함으로써 이윤과 효율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협동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부문의 정책수립 및 정책사업 시행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행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과 실천을 달성하여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냄을 목적으로 한다.”

발의안 전문은 자료 뒷 부분에 첨부

>>> 공공요금, 공공서비스, 전기요금 정상화

전력과 가스요금을 공공요금이라 칭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공공요금은 문재인법 상의 공공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더라도 공익성, 공공성을 띠 경우만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대기업이 제조,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가스가 공공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대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은 제조나 생산, 판매 과정에서 사용, 공익과 거리가 멀고,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 받아 대기업으로 경제적 이익이 집중, 불평등 확대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안 제3조에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문화, 정보통신 영역에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력이나 가스가 공공서비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거, 교통, 교육, 복지부문에 필요한 전력과 가스는 포괄적으로 공공서비스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관건은 일반 사용분, 특히 대기업이 사용한 전력과 가스 에너지가 공공서비스 적용 대상 여부이다.

지금까지 전력 가스 등 공공요금은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은 요금 기준을 적용하였다. (세부적으로 용도별 사용자에게 동일한 기준 적용)

반면 문재인법이 적용될 경우 산업, 상업 특히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가스서비스에 대하여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체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기본적인 생활, 교육 등에 필요한 난방, 냉방 등에 사용되는 전력과 가스 사용에 대해서만 공공서비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주택용 누진제에 일부 포함된 개념) 한발 더 나아가 산업용 요금격차는 불평등, 대-중소기업 상생, 양극화, 역차별과 관련된 이슈도 존재한다.

대기업 전력단가가 주택용, 중소기업보다 낮음

2015년	전력량 (GWh)	요금 (억원)	단가 (원/kWh)
산업용 전체	273,548	293,826	107.4
현대제철	12,025	11,605	96.5
삼성전자	10,042	9,662	96.2
포스코	9,391	8,267	88
삼성디스플레이	7,219	6,934	96.1
LG 디스플레이	6,182	5,951	96.3
SK 하이닉스	5,121	4,932	96.3
LG 화학	3,321	3,267	98.4

자료: 국회, 한국전력

전기요금 정상화 공약, 산업용 변화 예상



자료:문재인1번가

현재 전기요금구조는 주택용보다 산업용 단가가 저렴하고, 산업체 특히 대기업 전력단가가 평균단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중소기업 전력단가 역시 대기업보다 높다.

2015년 기준 주택용 평균단가는 123.7원/kWh, 산업용 107.4원/kWh이다. 특히 대기업 요금단가는 95.8원/kWh 이며 대기업 단가가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107.4원/kWh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주로 경부하 사용량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나 결과적으로 차별적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결국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산업용과 주택용간 역차별이 존재하고 불평등을 확대하고 전력설비의 비대칭적 지역분포로 인해 공동체 발전,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런 배경이 전기요금 정상화 공약에 담긴 근본적인 철학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공공요금 체계 수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공공서비스 차별화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비영리 특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이나 가스 서비스 전체가 공공서비스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목적 혹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문만이 비영리로 판단된다. 주택용, 교육용, 가로등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 일부는 비영리 혹은 낮은 투자보수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이나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서비스까지 비영리 사업수준으로 제공할 경우, 에너지 소비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을뿐더러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는 불평등이 확대되어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렴한 전력요금 때문에 국내에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해외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환경오염, 송전탑 건설 등 사회적 갈등 확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사용량을 바탕으로 투자보수 규모를 가늠해보면 공공서비스로 인한 수익감소 추정이 가능하다.

2016년 기준 주택, 교육, 가로등용 전력소비는 각각 전체 소비의 13.7%, 1.6%, 0.7% 수준이다. 주택용의 경우도 전체 소비보다는 기본적인 냉난방 등 일부 사용량에 대해서만 공공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과 교육용 소비도 환경개선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 효율화 필요성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사용량에 대한 공공서비스화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할 경우 주택, 교육, 가로등 전력소비 비중 16%중 약 절반 수준인 8%의 전력소비에 해당하는 투자보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

2018년 규제부문 투자보수 4.5조원 중에서 공익서비스 관련 8%를 비영리로 반영할 경우 투자보수는 4.5조원에서 4 ~ 4.2조원 수준으로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규제부문 수익 1.2조원을 포함할 경우 한국전력 2018년 예상 순이익은 5.2조원 수준이며, 이를 기반으로 적정원가나 투자보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요금기저, 투자보수 산출 내역은 2/28일 자료 참조)

한국전력 규제/비규제 투자보수(요금기저와 투자보수는 자회사 포함, 비영리 공공서비스 조정 내용 미반영)

	요금기저	감가상각비	법인세비용	적정투자보수	영업외수익
2005	511,733	16,318	11,841	31,216	25,436
2006	534,637	16,757	12,979	34,217	21,502
2007	552,126	17,586	12,566	33,128	23,659
2008	567,740	18,151	10,150	31,793	3,301
2009	576,137	18,851	10,356	32,437	20,040
결산					
2010	609,085	19,219	11,881	37,215	31,847
2011	642,098	20,090	12,177	38,141	26,638
2012	673,444	20,648	10,321	32,325	22,630
2013	680,899	19,696	10,000	31,321	15,927
2014	722,650	20,442	5,218	34,615	9,779
2015	761,153	22,018	4,492	30,446	11,328
전망					
2016E	823,118	25,390	4,781	31,840	11,656
2017E	888,968	28,018	5,089	40,550	11,993
2018E	941,700	31,390	5,416	45,815	12,341

자료: 한국전력, 키움증권 (2016년 결산정보는 미정, 예산정보 사용)

가스부문도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보수가 소폭 축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공요금 산정방식도 비영리 공공부문과 일반부문 사용량을 분리,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가치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참여할 경우, 세부적인 원가 정보 공개와 투자 보수 산정 과정 등 요금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법은 공공기관 운영과정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원칙과 절차, 범위 등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참여도 명시하고 있다. 그간 영업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많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정책 투명성 개선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시장개방과 계통안정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와 별개로 전력과 가스 시장개방, 개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일반서비스 구분을 떠나 공공서비스 제공에는 막대한 자본투자가 필요하고, 효율적 투자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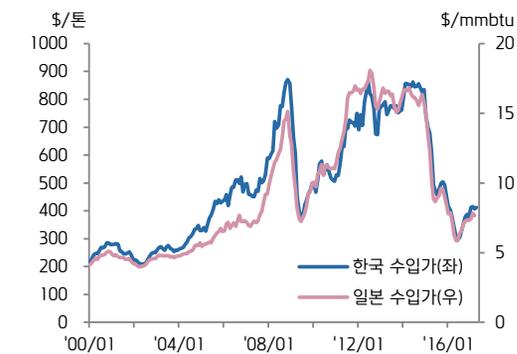
또한 공공성, 자본 효율성과 독립적으로 계통안정 역시 필요하다. 신재생 확대로 간헐성 전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발전량 변동에 따라 적절한 수요조절이 필요하고 독점사업자에 의한 수요조절보다는 다수 사업자 간의 경쟁이 효율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최근 글로벌 전력시장 개방의 배경이다.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전력과 가스 시장개방과 효율화가 다시금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LNG 시장이 개방된 일본의 LNG 도입가격은 한국보다 약간 저렴하다. (일본 대지진 직후 LNG 수요 급증시기에는 일본 도입가격이 상승) 일본의 경우 시장 개방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가스공사가 독점공급하고 있고 도입원가를 100% 반영하는 원가산정 구조이다. 도입원가를 낮출 인센티브가 부재한 시장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 LNG 도입 가격 추이



자료: 블룸버그

한일 LNG 도입가 스프레드, 일본이 저렴하게 수입



자료: 블룸버그

전력 계통안정 이슈는 신재생 보급 확대 이전에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2011년 블랙아웃 이후 전력수급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계통안정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동두천복합화력의 출력 감소가 삼천포화력의 출력감소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계통안정을 위협했다. (전력계통 주파수는 60Hz에서 +/- 0.2Hz의 변동을 허용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계통안정이 위험해 질 수 있다, 당시 59.71Hz로 하락)

동두천복합화력 연료계통에 문제가 발생, 858MW 발전설비 2기 가동이 중단되었다. ESS 설비를 통해 주파수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삼천포 3호기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ESS 설비 뿐 아니라 석탄 화력발전소도 계통안정 회복에 투입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블랙아웃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계통안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신재생 발전 증가에 따라 보다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10월 31일 동두천복합발전 고장으로 계통 주파수 하락, 신재생 확대 시 보완 메커니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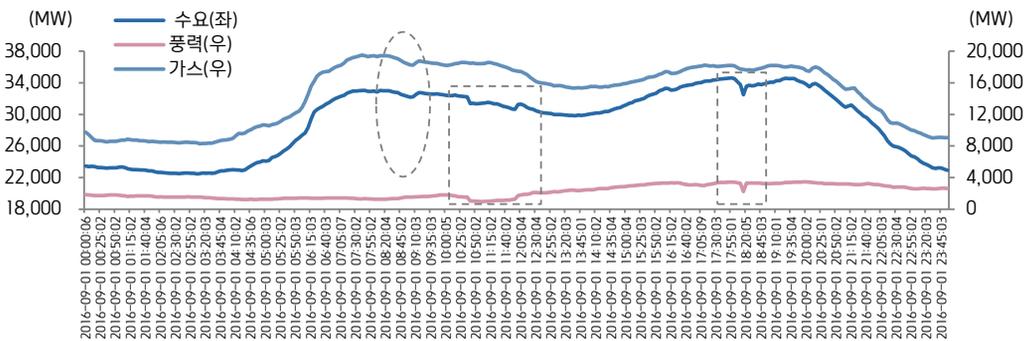


자료: 이투데이

당시 문제가 되었던 동두천복합화력과 삼천포 3호기 발전 용량은 각각 1.7GW, 0.5GW 이었고, 전력 수요는 65GW 수준이었다. 즉 2.6% ~ 0.8% 전력공급 변화가 계통안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보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진행된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풍력발전의 급격한 출력 저하는 연간 수 차례 발생하며, 복수 사업자들이 다양한 수요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계통안정과 시장 효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세 내용은 2/28일 자료 참조)

영국 풍력발전 출력 급감 사례, 풍력 확대 시 계통 안정을 위한 시장 구조 개혁 불가피



자료: 영국 ofgem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 방안에 대한 준비가 뒤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우리와 같이 외부와 단절된 전력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력시장 개방을 통해 계통안정을 확보하였다. 영국과 유사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

Ⅲ. 국민 관심 1순위, 깨끗한 에너지 정책

사회망에서 확인되는 국민 관심 1순위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다. 사회망 민심이 국민 전체 의견을 100%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국민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아 국정 방향에 반영 될 확률이 높다. 대선 공약과 일치하는 만큼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다.

자원과 경제성장 등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할 정부의 고심이 깊겠지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지속성과 사회적 가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유틸리티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사회적 비용 반영을 위한 전기 구입비 연동제 도입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정책 투명성과 수익 안정성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문재인 캠프는 대선과정에서 공약 정책 쇼핑물 “문재인1번가”(www.moon1st.com)를 운영하였다. 여기서 확인되는 국민 선호 1순위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다. 2,3순위 주거 문제에 이어 또 다시 5순위로 환경 이슈인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다.

환경/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판단한다. 환경 개선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만큼 정책 수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 관심 1순위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반영 가능성 높음

순위	공약명	좋아요
1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285,748
2	도시재생 뉴딜	229,286
3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	225,407
4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정책	223,812
5	안전이 정착된 나라	223,376
6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213,844
7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212,275
8	최순실 없는 나라	170,081
9	우리 아이, 평등 세상	148,218
10	남녀 같은 임금 같은 대우	70,386
11	81 만개의 안심	64,604
12	청년 일자리 예약석	63,457
13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	48,671
14	안전한 먹거리 국가책임제	47,455

자료: 문재인1번가 (5월 24일 기준)

>>> 미래 세대와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요금/세제 개편 예상

대통령의 2순위 관심사는 환경, 에너지/미래세대로 보인다.

당선 후 첫 행보는 인천공항이었고 여기서 일자리 정책이 공개되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은정 초등학교 방문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임기 내 폐기와 응급대책으로 6월 노후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을 발표하였다.

초등학교 방문을 2번째로 택한 배경은 미래 세대와 환경에 대한 정책 중요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공약 내용이었던 “미래의 희망 어린이를 위한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국정 과제에 우선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사회적 비용 반영이 필요하다. 요금과 에너지 세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촉진할 인센티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관건은 투자 주체와 재원으로 판단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 발전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발전량을 유지하려면 일반 발전 대비 통상 8배의 설비용량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공기업의 수익을 통해 진행할 지, 혹은 세금 투입을 통해 진행할지인데, 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 세금을 통한 자원 마련은 기여자와 수혜자가 상이할 가능성이 높아 불평등과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금 혹은 에너지 세제에 투자자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사회적 비용 반영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촉진을 위하여도 공공요금 개편이 필요하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 당시부터 언급되었던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한다.

미래세대 공약



자료:문재인1번가

미세먼지 공약



자료:문재인1번가

IV. 공공요금, 에너지 세제 수정 가능성

대선 공약과 공공기관 운영 정책 기본원리에 바탕 할 때 요금제도와 에너지 세제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공공요금제도는 경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 증가 혹은 효율 증가를 추구했다. 그러나 현 요금제도는 특정 사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고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 될 가능성, 소비자간 불평등 심화, 경제적 이익의 해외 유출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앞으로의 공공정책은 경제 효율에 덧붙여 환경, 미래세대, 공동체 가치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비용 반영, 요금 격차 축소, 정책 운영 투명성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유틸리티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낮은 요금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

기존 요금제도는 수출 중심 경제성장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낮은 요금은 가정과 기업체 모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윤을 확대하는 발판이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이다.

그러나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경우, 기존 요금제도 수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정상화 공약, 요금 격차 해소 예상



자료:문재인번가

환경급전 공약, 사회적 비용 반영 예상



자료:문재인번가

요금격차로 인해 불평등 확대, 사회적가치 훼손

현재 전력요금은 “공공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요금격차가 존재한다.

2015년 기준 산업용 전력단가는 107.4원/kWh로 일반용 전력단가 130.5원/kWh 및 주택용 123.7원/kWh 보다 저렴하다. 특히 대기업의 평균 전력단가는 95.8원/kWh으로 산업용 평균단가 보다 -10.8% 저렴하고 일반용 단가보다는 -26.5% 저렴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대기업에 이익이 집중된다.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요금이 낮아져 구조적으로 전력소비를 장려하고 전력소비 행태에 따라 불평등이 존재하는 요금구조이고 환경 오염과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요금제도이다.

문재인법이 추구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려면 용도별 요금제 대신 전압별 요금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낮은 수요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경부하 요금도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

경부하 전력을 위한 발전도 동일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낮은 요금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져 대기오염을 촉진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경부하 요금제도 역시 경제적 이익의 집중과 전력소비를 부추겨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측면에서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요금격차 존재, 산업용 요금이 교육용 요금보다 저렴

	주택	일반	교육	산업
판매량(TWh)	66	104	8	274
판매액(억원)	81,162	135,264	8,707	293,826
평균단가	123.7	130.5	113.2	107.4

자료: 한국전력

사회적 가치의 국외 유출

적정 수준을 하회하는 요금을 유지할 경우 사회적 가치가 국외로 유출된다.

저렴한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여 제조한 수출품은 해외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확대 뿐 아니라, 환경 피해까지 감소시킨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외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환경 피해가 국내에 남겨지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특히 비용과 피해가 즉시 발생하지 않고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현 세대가 부담할 이용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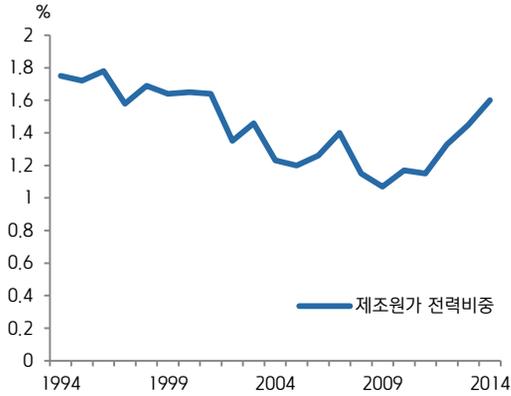
결국 적정선 이하의 요금은 수출업체에 경제적 이익 집중, 수출로 인한 사회적 가치의 국외 유출, 환경 피해 확대,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등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력요금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산업 내재 경쟁력보다는 전력요금 경쟁력으로 귀결되며, 전력요금을 제외한 기본적인 경쟁력은 약하다는 의미이다.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은 약 1.5% 내외로 보고된다. 또한 국내 산업용 전력요금이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기요금이 산업경쟁력에 약화시킨다는 의견은 본질적인 경쟁력보다는 국가 지원에 의지하고 지속가능성 낮은 논리로 판단한다.

제조업원가 중 전력요금 비중은 1.5% 수준



자료: 한국전력

국가별 산업용 요금,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

	\$/kWh
한국	0.058
이탈리아	0.258
미국	0.068
캐나다	0.07
일본	0.154
영국	0.121
OECD 평균	0.107

자료: 한국전력 (2012년 기준)

>>> 에너지 세제

에너지 세제 역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에너지 세제 역시 성장과 산업적 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전력요금과 유사한 용도별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불평등과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깨끗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산업과 사회 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별 형평성 및 감축 효과 고려될 전망

발전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전력은 환경관련 세금이 없다. 과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구입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연료별로 세율 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유연탄은 관세가 면제되고 발전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5,000kcal 미만 27원/kg, 5,500kcal 이상 33원/kg 수준으로 4월 평균 도입단가 75\$/톤의 39% 수준이 부과된다. 부가세를 제외한 최종 가격 기준 세율은 약 28% 수준이다. 동일 기준으로 연료별 세율은 휘발유 49%, 경유 38%, LNG 13% 이다. 유연탄 세율이 낮지 않다.

에너지 원별 세율 현황

구분		휘발유 (원/L)	경유 (원/L)	LPG(원/kg)		LNG (원/kg)	등유 (원/L)	중유 (원/L)	우라늄 (원/kg)	유연탄 (원/kg)	전력 (원/kWh)	관련회계/ 기금
				부탄	프로판							
관세	기본	3%	3%	3%	3%	3% (6개월)	3%	3%	-	0%	-	
	할당	3%	3%	2%	2%	2% (6개월)	3%	3%	-	0%	-	
개별 소비 세	기본	-	-	(252)	(20)	60	(90)	(17)	-	24 ¹	-	
	탄력	-	-	275	14 ²	(42)	63	17	-	27/21 ³	-	
교통 에너 지 환 경세	기본	(475)	(340)	-	-	-	-	-	-	-	-	교특(80%) 환특(15%) 에특(3%) 광특(2%)
	탄력	529	375	-	-	-	-	-	-	-	-	
교육세		79.4	56.2	41.3	-	-	9.5	2.6	-	-	-	
지방주행세		137.5	97.5	-	-	-	-	-	-	-	-	
부가가치세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수입부과금		16	16	-	-	24.2	24.2	16	16	-	-	에특
판매부과금		36(고급)	-	62.3	-	-	-	-	-	-	-	
안전관리 부담금		-	-	4.5	4.5	4.8	4.8	-	-	-	-	
품질검사 수수료		0.47	0.47	0.03	0.03	0.03	-	0.47	0.47	-	-	
전력산업기 반기금		-	-	-	-	-	-	-	-	-	-	전산기금

자료: 국회

반면 산업용은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013년 기준 유연탄 소비량은 1억 1,883만톤이며 이중 발전용은 37%, 산업용으로는 33%가 소비된다. 발전용과 산업용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각각 20만톤과 15만톤 수준이다.

발전에 비하여 적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하는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면세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미세먼지 억제 효과도 없다. 비대칭적인 과세로 인해 경제적 이익 집중을 심화한다는 점, 산업용 석탄 소비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낮은 전력요금과 동일하게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무연탄 역시 면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무연탄 연간 소비량은 2013년 기준 224만톤으로 유연탄 소비량의 2%에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무연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45만톤으로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11.9%를 차지하고 있다. 유연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상회한다. 무연탄은 대부분 가정용에서 소비되면서 비효율적 보일러, 오염물질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와 사회적 비용과 측면에서 무연탄 사용을 전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석탄별 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발전용 과세, 산업용 유연탄과 무연탄 면세

	발전	유연탄		무연탄
		산업용	합계	
소비량	7,969	3,914	11,883	224
(만톤)	67.1%	32.9%		
대기오염물질	204,379	147,550	351,929	450,617
(톤)	58.1%	41.9%		
세율	과세	면세		면세

자료: 국회

효과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에너지 세제 수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인센티브 필요

전력부문 미세먼지 대응에는 발전사업자의 대응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요금제도 혹은 에너지 세제에는 소비자가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을 소비하거나 전력소비를 효율화할 어떠한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

에너지 세제나 요금제도를 통해 전력소비를 효율화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발전을 줄일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메커니즘의 존재가 전체 사회적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전력소비를 효율화하고 발전과정의 환경비용을 소비자에게 전달,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을 통해 환경비용을 요금에 반영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전력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발전믹스의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장기전력수급계획 혹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V. 대기오염물질 감축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감축 역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일부의 부담보다는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배출원 중심으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발전부문의 직접적 규제 뿐 아니라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부담 강화가 예상된다.

오염배출이 가장 많은 경유와 소비량은 적어 감축 이행이 용이할 무연탄에 대한 대응이 가장 효율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서울인상을 통한 배출억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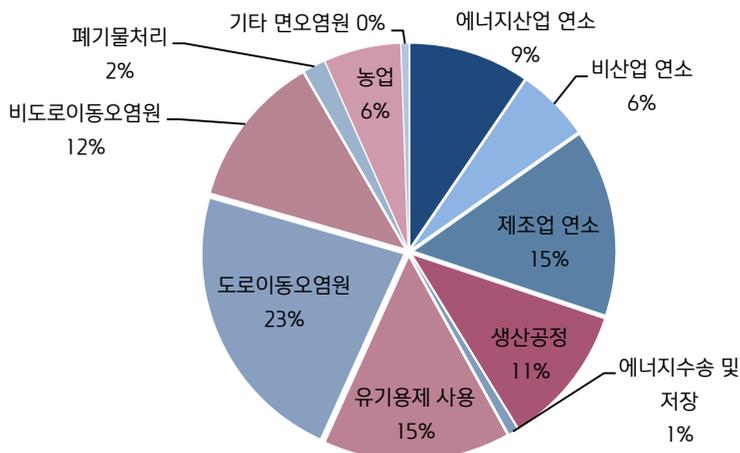
정부는 응급조치로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조치는 미세먼지 감축 공약 이행 및 실행 용이성 측면에서 취해진 조치로 판단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근거할 때 노후 석탄화력발전 중단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부담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2013년 기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378만톤이다.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은 차량 등을 포함한 도로이동오염원 22.6%, 유기용제 사용 14.9%, 제조업 연소 14.8%, 건설장비 등을 포함한 비도로이동오염원 12.2% 순이다. 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 산업 연소는 9.6%를 차지하고 있다.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연소는 9.6% 차지



자료: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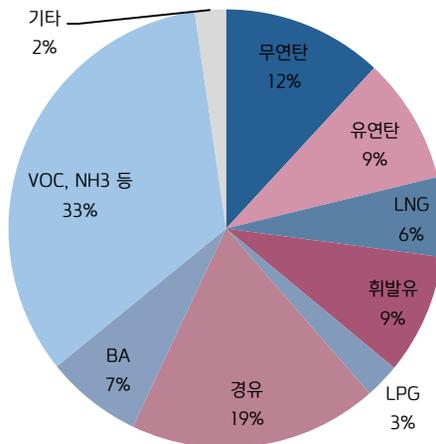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VOC 및 암모니아 등 33.5%, 경유 18.5%, 무연탄 11.9%, 유연탄 9.3%, 휘발유 8.9% 순이며, 화석연료 및 연소로 인해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전체 발생량의

97.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일 연료로는 톨루엔, 벤젠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VOC가 24% 다음으로 경유가 18.5%로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유기용제는 페인트, 세탁, 산업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면 경유는 대부분 차량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가 어려운 유기용제는 사용 후 회수를 중심으로, 경유는 에너지 세제 조절을 통해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은 연료원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무연탄은 연간 약 200만톤이 소비되는 반면 약 12%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무연탄 가격을 80\$/톤으로 가정하면 약 1,600억원 소비가 12%의 오염물질 발생으로 이어진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대부분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 전력난방을 무연탄 비용의 3배로 가정하면 전력으로 대체 시 연간 3천억원 재원으로 1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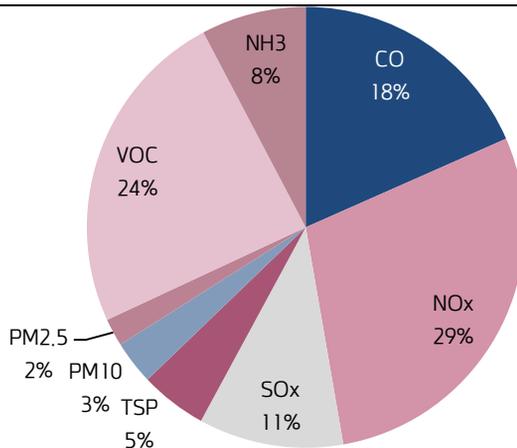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유기용제, 경유, 무연탄, 유연탄 순



자료: 정부

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질소산화물 28.8%, 유기용제 24.2%, 일산화탄소 18.4%, 황산화물 10.7% 순이다.

오염물질별 배출 현황, 질소산화물, 탄소산화물, 황산화물 순



자료: 정부

대기오염물질 중 부유분진, PM10, PM2.5등 1차 미세먼지는 전체 배출량의 10.2% 를 차지한다. 질소 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햇빛 등과 반영하여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와 해외에서 유입되는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미세먼지 중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분진, PM10, PM2.5 는 총 33만톤 수준으로 국내 발생량의 8.8%를 차지한다. 노후 석탄화력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예상된다.

부문별, 물질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배출원 대분류	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소계
에너지산업 연소	63,457	177,219	97,565	4,961	4,524	3,573	8,545	1,745	361,589
비산업 연소	87,532	88,769	31,101	2,289	1,955	1,226	2,784	1,392	217,048
제조업 연소	20,125	178,034	95,836	138,826	81,014	41,606	3,537	800	559,778
생산공정	24,912	55,151	108,333	11,819	6,249	4,829	174,156	35,051	420,500
에너지수송 및 저장							27,241		27,241
유기용제 사용							562,070		562,070
도로이동오염원	409,218	335,721	189	12,103	12,103	11,135	65,807	9,839	856,115
비도로이동오염원	82,615	246,027	65,119	15,170	15,167	13,953	22,288	220	460,559
폐기물처리	1,957	9,529	6,517	330	243	202	46,508	23	65,309
농업								231,117	231,117
기타 먼오염원	6,865	165		488	310	279	637	12,785	21,529
합계	696,682	1,090,614	404,660	185,986	121,563	76,802	913,573	292,973	3,782,853
비중	18.4%	28.8%	10.7%	4.9%	3.2%	2.0%	24.2%	7.7%	

발전(에너지에포함)	58,448	163,881	89,479	4,707	4,339	3,452	7,761	1,442	275,061
물질별 비중	8.4%	15.0%	22.1%	2.5%	3.6%	4.5%	0.8%	0.5%	7.3%

자료: 정부

VI. 관련 법안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통치 철학, 가치관 등 기본 운영 원칙을 포함한 법안 국회 심의 중.

정권 교체에 따라 입법 가능성이 높고, 공공부문뿐 아니라 경제부문을 포함하고 있어 처리 속도도 빠를 것으로 전망. 바른 정당 역시 여당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입법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 유틸리티와 관련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6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10886) - 임기만료폐기
- 2016년 8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1624) - 심사진행중
- 2016년 8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의안번호 1614) - 심사진행중
- 2016년 10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유승민,의안번호 2616) - 심사진행중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전문

문재인의원 대표발의, 2014.6.17, 의안번호 10886

제안이유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음.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함.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임.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운영원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사회적 가치를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고려하는 사회·경제적 기제가 절실하며,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핵심 국가운영원리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사회적경제나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원리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기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이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이 이유임.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기본원리로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수행과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리 행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공공기관의 조직운영 및 공공서비스 공급과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할 필요가 있음. 이 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성이 강화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됨.

이 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로 설정함으로써 이윤과 효율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협동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에서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함 (안 제3조).
- 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준수해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본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업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마.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 사.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금융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국공유재산 활용지원, 재정지원 등의 지원체계와 원칙을 규정함(안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근거로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책임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 차.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기본원칙과 평가주체, 평가과정을 규정하고, 사회적가치성과평가에 있어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카.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부문의 정책수립 및 정책사업 시행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행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과 실천을 달성하여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사업 수립과 수행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의 기제를 규율하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의 정신을 실천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바.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
-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구매방식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수행되는 민주적이고 호혜적인 사람중심의 경제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인정되는 기업
6.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영역에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 “사회적가치성과평가”란 사회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조사·예측·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업자”란 영리·비영리 목적과 상관 없이 제조업, 서비스업, 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 ② 공공기관은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걸쳐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업자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사회적 가치 기반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본이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 가치 실현대상의 범위와 역할

제6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①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등 조달과 행정사무 민간 위탁사업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사업(공사 및 용역 포함)
3.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업
4. 기타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하는 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제7조(공공기관의 조달 및 위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구입, 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수행할 때 사회책임조달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등에 관한 구매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의 수주(受注)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2. 구매 의무비율 설정
 3. 제한경쟁입찰 등 입찰방식 변경
 4. 계약방식 변경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 시 수의계약 허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③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등에 관한 구매나 위탁 등이 수행되는 지역실정과 공공기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계약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입찰 및 계약 체결의 방식·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8조(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수행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계획수립·시행·성과평가 시에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회적 가치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수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목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의 수주(受注)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1.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우선참여 보장
 2. 제한경쟁입찰 등 입찰방식 변경
 3. 계약방식 변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등
- ④ 공공기관은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실정과 공공기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계약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 ⑤ 제3항의 입찰 및 계약 체결의 방식·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 정책계획 및 시행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 정책계획 및 시행 등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구입, 용역,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등을 수행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 등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주(受注)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2. 구매 의무비율 설정
 3. 제한경쟁입찰 등 입찰방식 변경
 4. 계약방식 변경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④ 제3항의 입찰 및 계약 체결의 방식·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3장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 수립

제10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 내용을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의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과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의 실전을 위한 실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 내용을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이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5조(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4항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대상인 공공부문 사업과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⑤ 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및 지역추진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관한 승인

2.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사업의 범위 결정
3.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주체 및 과정에 대한 세부내용
4.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통해 창출된 가치규모와 실적 등을 취합하여 사회적 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회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의 원칙과 체계

제18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 ①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지속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이 민간분야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육성·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육성·지원 정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의 사회적 가치 지향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제로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서비스 등 기존 국가제공 서비스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사회적 가치 우선고려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참여확대를 위한 사항
6.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제19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 ①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정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기업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및 공시제도 등의 도입

4. 사회적경제조직 등 사회적 가치 지향의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제20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①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임대기간 사용수익 등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한다.

③ 국·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23조의 사회적 책임 실천 조항

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국·공유재산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함에 있어 필요한 기반조성, 재정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그 육성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실천) 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로부터 국·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받거나 금융지원을 받는 등 지원을 받는 사업자는 자율경영공시제에 참여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실천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후 계약 등 과정에서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원칙과 방식

제24조(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기본원칙) 사회적가치성과평가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제25조(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절차) ① 공공기관은 기본계획 및 지역 추진계획의 시행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자체평가한다.

② 공공기관은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결과를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가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성과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부문별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회적가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고한 자체평가 결과와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사회적가치위원회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가치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실현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은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③ 사회적가치성과평가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공기관의 조직운영 및 성과평가에 있어 사회적가치성과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조직운영에 대한 경영평가 등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사회적가치성과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산하 기관이 수행한 사업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성과평가 및 경영평가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조직운영에서 실현된 사회적 가치도 평가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가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포상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및 평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구매 및 정책시행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 규모가 큰 공공기관

2. 활동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 규모가 큰 개인, 기업 또는 법인

3.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정부는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이 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정부출연기관,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협력의 증진)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해외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평가에 관한 정보교환,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2016.8.17, 의안번호 1614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촉진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조직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한 배당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사용 ⑤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가치”를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2016.10.11, 의안번호 2616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임.

이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함.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임.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함.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ONLINE NO.1 KIWOOM SECURITIES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기업분석

한국전력
(015760)

BUY(Maintain)/목표주가 56,000원
공기업 투명성 개선 예상

한국가스공사
(036460)

Outperform(Upgrade)/목표주가 58,000원
친환경 정책 강화로 수혜 기대

한전기술
(052690)

Marketperform(Maintain)/목표주가 26,000원
해외 원전 시장이 관건

한국전력 (015760)



BUY(Maintain)

주가(6/2) 43,450원

목표주가 56,000원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반영된 에너지 정책 수정이 예상된다. 환경과 안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뿐 아니라 공약성에 대한 가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우리는 정책 방향 수정이 동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민간의 정책 참여 확대로 투명성과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tock Data

KOSPI (6/2)	2,371.72pt	
시가총액	278,933억원	
52주 주가동향	최고가	최저가
	62,900원	40,350원
최고/최저가 대비 등락율	-30.92%	
주가수익률	절대	상대
1M	-2.9%	-9.1%
6M	0.0%	-16.9%
1Y	-27.3%	-39.2%

Company Data

발행주식수	641,964천주
일평균 거래량(3M)	1,864천주
외국인 지분율	31.65%
배당수익률(17.E)	4.77%
BPS(17.E)	118,984원
주요 주주	정부 51.11%

Price Trend



공기업 투명성 개선 예상

>>> 정책 수정, 밸류에이션에 긍정적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상존. 인수위 부재로 에너지 정책 방향 확인이 지연되는 점도 영향.

대선 공약 내용과 대통령 통치 철학을 반영한 정책으로 수정 예상. 새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환경개선, 미래세대, 공동체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민간이 정책 수립, 운영, 평가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원가정보, 투보울 등 정책 투명성과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정책 수정은 밸류에이션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분석.

>>> 산업용 요금인상 가능성

낮은 요금은 불평등을 확대함, 적정수준의 요금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유리. 공약 이행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산업용 요금 인상, 전압별 요금제 도입 등 제도 수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함.

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제 수정 가능성 높음. 소비자 에너지 소비 효율화, 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 가능성이 높음.

>>> 정책 변화에 대비할 시점

이번 공공정책 수정은 경제 정책과도 연계.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정책 반영 가능성 높아 보임. 정책반영 시점도 역시 멀지 않은 것으로 판단.

공공성 확대에 의한 투자보수 감소보다 투명성 개선과 안정성 강화가 밸류에이션에 긍정적 영향 미칠 전망이다.

투자지표	2015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억원)	589,577	601,904	617,477	629,827	648,721
보고영업이익(억원)	113,467	120,016	96,420	99,608	102,597
핵심영업이익(억원)	113,467	120,016	96,420	99,608	102,597
EBITDA(억원)	196,881	209,626	185,970	189,103	192,040
세전이익(억원)	186,558	105,135	84,625	86,912	87,544
순이익(억원)	134,164	71,483	59,914	61,534	66,358
지배기업주주순이익(억원)	132,891	70,486	59,078	60,675	65,432
EPS(원)	20,701	10,980	9,203	9,451	10,193
증감율(%YoY)	394.6	-47.0	-16.2	2.7	7.8
PER(배)	2.4	4.0	4.8	4.7	4.3
PBR(배)	0.5	0.4	0.4	0.3	0.3
EV/EBITDA(배)	4.2	3.7	3.9	3.8	3.6
보고영업이익률(%)	19.2	19.9	15.6	15.8	15.8
핵심영업이익률(%)	19.2	19.9	15.6	15.8	15.8
ROE(%)	21.9	10.1	7.9	7.7	7.8
순부채비율(%)	74.0	66.3	57.4	52.0	45.8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	589,577	601,904	617,477	629,827	648,721
매출원가	454,577	455,496	493,982	502,602	517,680
매출총이익	135,000	146,408	123,495	127,225	131,042
판매비및일반관리비	21,533	26,392	27,075	27,617	28,445
영업이익(보고)	113,467	120,016	96,420	99,608	102,597
영업이익(핵심)	113,467	120,016	96,420	99,608	102,597
영업외손익	73,091	-14,881	-11,796	-12,697	-15,052
이자수익	2,416	2,418	1,637	1,670	1,720
배당금수익	141	94	64	65	67
외환이익	2,395	2,701	1,000	0	0
이자비용	20,157	17,529	18,000	19,000	20,000
외환손실	9,477	5,606	1,000	0	0
관계기업자본손익	2,074	-1,373	500	500	0
투자및기타자산처분손익	85,614	328	200	200	0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6,043	1,153	795	800	0
기타	4,041	2,932	3,008	3,068	3,160
법인세차감전이익	186,558	105,135	84,625	86,912	87,544
법인세비용	52,394	33,651	24,710	25,378	21,186
유효법인세세율(%)	28.1%	32.0%	29.2%	29.2%	24.2%
당기순이익	134,164	71,483	59,914	61,534	66,358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132,891	70,486	59,078	60,675	65,432
EBITDA	196,881	209,626	185,970	189,103	192,040
현금순이익(Cash Earnings)	217,578	161,093	149,464	151,028	155,802
수정당기순이익	68,248	70,476	59,210	60,826	66,358
증감율(% YoY)					
매출액	2.6	2.1	2.6	2.0	3.0
영업이익(보고)	96.1	5.8	-19.7	3.3	3.0
영업이익(핵심)	96.1	5.8	-19.7	3.3	3.0
EBITDA	44.1	6.5	-11.3	1.7	1.6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394.6	-47.0	-16.2	2.7	7.8
EPS	394.6	-47.0	-16.2	2.7	7.8
수정순이익	154.6	3.3	-16.0	2.7	9.1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영업활동현금흐름	168,284	164,451	170,493	157,734	165,387
당기순이익	134,164	71,483	59,914	61,534	66,358
감가상각비	82,691	88,813	88,813	88,813	88,813
무형자산상각비	723	797	737	682	631
외환손익	6,172	2,535	0	0	0
자산처분손익	90,075	5,056	-200	-200	0
지분법손익	0	0	-500	-500	0
영업활동자산부채 증감	-24,397	-23,086	21,824	7,470	9,650
기타	-121,144	18,854	-94	-64	-65
투자활동현금흐름	-96,593	-95,705	-108,104	-136,288	-137,798
투자자산의 처분	-51,055	26,694	20,349	-853	-1,306
유형자산의 처분	98,438	2,080	0	0	0
유형자산의 취득	-140,499	-120,288	-126,302	-132,617	-132,617
무형자산의 처분	-875	-1,240	0	0	0
기타	-2,602	-2,951	-2,150	-2,817	-3,874
재무활동현금흐름	-52,066	-76,375	-2,702	-4,559	-703
당기차입금의 증가	-654	-496	0	0	0
정기차입금의 증가	-48,923	-55,662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지급	-4,263	-21,049	-12,711	-13,481	-13,481
기타	1,774	832	10,008	8,923	12,779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	19,868	-7,317	59,687	16,887	26,88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7,963	37,831	30,514	90,201	107,08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7,831	30,514	90,201	107,088	133,975
Gross Cash Flow	192,681	187,537	148,670	150,264	155,736
Op Free Cash Flow	-757	26,598	53,337	34,870	44,244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유동자산	220,253	197,085	223,114	242,659	273,613
현금및현금성자산	37,831	30,514	90,201	107,088	133,975
유동금융자산	53,477	26,842	5,557	5,668	5,838
매출채권및유동채권	77,328	81,172	82,330	83,977	86,496
재고자산	49,464	54,794	41,165	41,988	43,248
기타유동비금융자산	2,154	3,763	3,860	3,937	4,055
비유동자산	1,532,320	1,581,285	1,622,201	1,669,872	1,718,464
장기매출채권및비유동채권	9,670	10,922	11,204	11,428	11,771
투자자산	94,007	94,823	96,353	97,660	98,861
유형자산	1,413,614	1,457,431	1,494,920	1,538,725	1,582,529
무형자산	8,584	9,834	9,097	8,415	7,784
기타비유동자산	6,446	8,276	10,626	13,644	17,518
자산총계	1,752,574	1,778,370	1,845,315	1,912,531	1,992,077
유동부채	227,108	247,392	256,261	265,817	278,659
매입채무및유동채무	98,046	102,523	105,176	107,279	110,498
단기차입금	7,206	9,267	9,267	9,267	9,267
유동성장기차입금	72,442	81,345	81,345	81,345	81,345
기타유동부채	49,414	54,257	60,473	67,925	77,549
비유동부채	846,040	800,473	811,345	820,953	834,780
장기매입채무및비유동채무	34,616	33,393	34,257	34,942	35,990
사채및장기차입금	514,491	451,201	451,201	451,201	451,201
기타비유동부채	296,934	315,878	325,887	334,809	347,588
부채총계	1,073,149	1,047,865	1,067,606	1,086,770	1,113,438
자본금	32,098	32,098	32,098	32,098	32,098
주식발행초과금	8,438	8,438	8,438	8,438	8,438
이익잉여금	481,872	531,739	578,337	625,771	677,959
기타자본	143,936	144,962	144,962	144,962	144,962
지배기업지분자본총계	666,345	717,237	763,835	811,269	863,457
비지배지분자본총계	13,080	13,269	13,874	14,492	15,181
자본총계	679,425	730,505	777,709	825,761	878,638
순차입금	502,831	484,458	446,055	429,057	402,001
총차입금	594,138	541,814	541,814	541,814	541,814

투자지표

(단위: 원, 배, %)

12월 결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주당지표(원)					
EPS	20,701	10,980	9,203	9,451	10,193
BPS	103,798	111,725	118,984	126,373	134,502
주당EBITDA	30,669	32,654	28,969	29,457	29,914
CFPS	33,892	25,094	23,282	23,526	24,270
DPS	3,100	1,980	2,100	2,100	2,100
주가배수(배)					
PER	2.4	4.0	4.8	4.7	4.3
PBR	0.5	0.4	0.4	0.3	0.3
EV/EBITDA	4.2	3.7	3.9	3.8	3.6
PCFR	1.5	1.8	1.9	1.9	1.8
수익성(%)					
영업이익률(보고)	19.2	19.9	15.6	15.8	15.8
영업이익률(핵심)	19.2	19.9	15.6	15.8	15.8
EBITDA margin	33.4	34.8	30.1	30.0	29.6
순이익률	22.8	11.9	9.7	9.8	10.2
자기자본이익률(ROE)	21.9	10.1	7.9	7.7	7.8
투자자본이익률(ROIC)	6.0	5.8	4.8	4.8	5.2
안정성(% 배)					
부채비율	157.9	143.4	137.3	131.6	126.7
순차입금비율	74.0	66.3	57.4	52.0	45.8
이자보상배율(배)	5.6	6.8	5.4	5.2	5.1
활동성(배)					
매출채권회전율	7.5	7.6	7.6	7.6	7.6
재고자산회전율	12.4	11.5	12.9	15.1	15.2
매입채무회전율	5.5	6.0	5.9	5.9	6.0

한국가스공사 (036460)



Outperform(Upgrade)

주가(6/2) 51,400원

목표주가 58,000원

친환경 정책 확대에 의한 수혜가 예상된다. 석탄발전 축소로 인한 발전용 수요증가와 수송 및 산업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깨끗한 천연가스로 연료전환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세계 수정 가능성도 높는데 이 경우 LNG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OPEC 감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약세 움직임으로 인해 해외 E&P 수익성 개선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Stock Data

KOSPI (6/2)	2,371.72pt	
시가총액	47,449억원	
52주 주가동향	최고가 51,700원	최저가 38,100원
최고/최저가 대비 등락율	-0.58%	34.91%
주가수익률	절대	상대
1M	10.8%	3.7%
6M	14.9%	-4.6%
1Y	31.6%	10.2%

Company Data

발행주식수	92,313천주
일평균 거래량(3M)	213천주
외국인 지분율	12.45%
배당수익률(17.E)	0.00%
BPS(17.E)	100,573원
주요 주주	기재부 외 54.46%

Price Trend



친환경 정책 강화로 수혜 기대

>>> 친환경 정책으로 수요 확대 예상

정책방향 수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석탄발전 축소로 인한 가스발전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수송, 산업 부문에서도 상대적으로 깨끗한 천연가스로 연료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망한다. 에너지 세계 개편 과정에서 오염물질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계 조정 가능성이 커 LNG 수요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해외 E&P 생산 확대

빠르면 하반기 후반 GLNG에 이어 Prelude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 해외 E&P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OPEC 감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LNG 스팟 가격 역시 연초 이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유가 약세가 반전되지 않을 경우 LNG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 E&P 부문 수익 구조 개선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상존한다.

>>> 공공기관 투명성 개선 수혜 기대

LNG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점은センチ먼트 개선에 긍정적이나 규제사업 투자보수는 판매량과 무관하게 산정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공공기관 정책 변경 시 정책운영 투명성이 개선될 가능성 높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자지표	2015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억원)	260,527	211,081	224,278	246,706	268,909
보고영업이익(억원)	10,078	9,176	10,161	10,683	11,690
핵심영업이익(억원)	10,078	9,176	10,161	10,683	11,376
EBITDA(억원)	23,546	25,348	25,387	26,096	26,964
세전이익(억원)	2,768	-8,496	4,200	4,502	5,252
순이익(억원)	3,192	-6,736	3,183	3,412	3,981
지배기업주주순이익(억원)	3,192	-6,741	3,186	3,415	3,984
EPS(원)	3,458	-7,302	3,451	3,699	4,316
증감율(%YoY)	-28.6	N/A	N/A	7.2	16.7
PER(배)	10.7	-6.6	14.0	13.1	11.2
PBR(배)	0.3	0.5	0.5	0.5	0.4
EV/EBITDA(배)	13.3	11.7	11.2	10.9	10.6
보고영업이익률(%)	3.9	4.3	4.5	4.3	4.3
핵심영업이익률(%)	3.9	4.3	4.5	4.3	4.2
ROE(%)	3.2	-6.9	3.4	3.6	4.0
순부채비율(%)	277.5	269.2	256.2	245.8	237.9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	260,527	211,081	224,278	246,706	268,909
매출원가	246,682	197,747	209,700	231,163	252,237
매출총이익	13,845	13,334	14,578	15,542	16,672
판매비및일반관리비	3,767	4,158	4,417	4,859	5,297
영업이익(보고)	10,078	9,176	10,161	10,683	11,690
영업이익(핵심)	10,078	9,176	10,161	10,683	11,376
영업외손익	-7,310	-17,672	-5,961	-6,181	-6,123
이자수익	230	340	362	398	434
배당금수익	218	0	0	0	0
외환이익	4,911	5,255	4,000	4,000	4,000
이자비용	7,764	8,408	8,047	8,326	8,326
외환손실	3,666	5,573	4,000	4,000	4,000
관계기업지분손익	896	1,145	1,000	1,000	1,000
투자및기타자산처분손익	-70	-80	0	0	0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4,649	3,464	500	500	500
기타	-6,713	-13,816	224	247	269
법인세차감전이익	2,768	-8,496	4,200	4,502	5,252
법인세비용	-424	-1,761	1,016	1,089	1,271
유효법인세세율(%)	-15.3%	20.7%	24.2%	24.2%	24.2%
당기순이익	3,192	-6,736	3,183	3,412	3,981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3,192	-6,741	3,186	3,415	3,984
EBITDA	23,546	25,348	25,387	26,096	26,964
현금순이익(Cash Earnings)	16,660	9,436	18,409	18,825	19,569
수정당기순이익	-2,088	-9,418	2,804	3,033	3,602
증감율(% YoY)					
매출액	-30.1	-19.0	6.3	10.0	9.0
영업이익(보고)	-6.0	-8.9	10.7	5.1	9.4
영업이익(핵심)	-6.0	-8.9	10.7	5.1	6.5
EBITDA	6.1	7.7	0.2	2.8	3.3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28.6	N/A	N/A	7.2	16.7
EPS	-28.6	N/A	N/A	7.2	16.7
수정순이익	N/A	N/A	N/A	8.2	18.8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영업활동현금흐름	54,562	47,693	27,356	17,453	14,717
당기순이익	3,192	-6,736	3,183	3,412	3,981
감가상각비	13,468	16,172	15,226	15,413	15,588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0
외환손익	-1,014	-231	0	0	0
자산처분손익	0	0	0	0	0
지분법손익	0	0	-1,000	-1,000	-1,000
영업활동자산부채 증감	38,559	31,380	13,028	-372	-3,852
기타	357	7,108	-3,082	0	0
투자활동현금흐름	-22,466	-20,789	-16,788	-18,343	-18,851
투자자산의 처분	1,806	-1,560	-486	-825	-817
유형자산의 처분	35	7	0	0	0
유형자산의 취득	-22,724	-18,414	-18,414	-18,414	-18,414
무형자산의 처분	-1,717	-581	0	0	0
기타	134	-240	2,112	896	380
재무활동현금흐름	-32,660	-23,766	1,226	11,088	2,068
당기차입금의 증가	0	0	0	2,000	0
장기차입금의 증가	-32,385	-24,601	0	7,000	0
자본의 증가	0	1,040	0	0	0
배당금지급	-219	-149	0	0	0
기타	-56	-56	1,226	2,088	2,068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	-714	3,455	11,795	10,199	-2,066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094	1,380	4,835	16,630	26,82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380	4,835	16,630	26,828	24,763
Gross Cash Flow	16,003	16,313	14,328	17,825	18,569
Op Free Cash Flow	39,208	35,831	17,542	4,725	1,944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유동자산	100,146	85,439	85,777	99,019	103,450
현금및현금성자산	1,380	4,835	16,630	26,828	24,763
유동금융자산	69	2,064	2,193	2,413	2,630
매출채권및유동채권	52,046	54,614	41,533	41,815	45,578
재고자산	17,950	10,700	11,368	12,505	13,631
기타유동비금융자산	28,701	13,226	14,053	15,458	16,849
비유동자산	323,708	313,840	316,430	320,410	324,722
장기매출채권및비유동채권	1,867	2,531	2,689	2,958	3,224
투자자산	23,431	23,059	24,415	26,021	27,621
유형자산	264,555	260,424	263,612	266,613	269,439
무형자산	25,209	24,157	24,157	24,157	24,157
기타비유동자산	8,646	3,669	1,557	661	280
자산총계	423,853	399,278	402,207	419,429	428,172
유동부채	57,287	55,563	57,153	61,855	64,531
매입채무및유동채무	14,061	20,509	21,791	23,970	26,127
단기차입금	15,342	3,384	3,384	5,384	5,384
유동성장기차입금	24,289	26,323	26,323	26,323	26,323
기타유동부채	3,595	5,347	5,655	6,179	6,697
비유동부채	265,997	249,851	251,088	260,195	262,281
장기매입채무및비유동채무	489	174	185	204	222
사채및장기차입금	240,896	229,872	229,872	236,872	236,872
기타비유동부채	24,612	19,804	21,031	23,119	25,187
부채총계	323,284	305,413	308,241	322,050	326,812
자본금	4,616	4,616	4,616	4,616	4,616
주식발행초과금	13,035	13,035	13,035	13,035	13,035
이익잉여금	64,190	57,248	60,434	63,849	67,833
기타자본	15,647	14,757	14,757	14,757	14,757
지배기업지분자본총계	100,569	92,737	92,842	96,257	100,241
비지배지분자본총계	0	1,127	1,125	1,122	1,119
자본총계	100,569	93,865	93,967	97,379	101,360
순차입금	279,078	252,679	240,756	239,337	241,186
총차입금	280,527	259,579	259,579	268,579	268,579

투자지표

(단위: 원, 배, %)

12월 결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주당지표(원)					
EPS	3,458	-7,302	3,451	3,699	4,316
BPS	108,944	100,460	100,573	104,272	108,588
주당EBITDA	25,507	27,459	27,501	28,269	29,209
CFPS	18,047	10,222	19,942	20,392	21,199
DPS	170	0	0	0	0
주가배수(배)					
PER	10.7	-6.6	14.0	13.1	11.2
PBR	0.3	0.5	0.5	0.5	0.4
EV/EBITDA	13.3	11.7	11.2	10.9	10.6
PCFR	2.0	4.7	2.4	2.4	2.3
수익성(%)					
영업이익률(보고)	3.9	4.3	4.5	4.3	4.3
영업이익률(핵심)	3.9	4.3	4.5	4.3	4.2
EBITDA margin	9.0	12.0	11.3	10.6	10.0
순이익률	1.2	-3.2	1.4	1.4	1.5
자기자본이익률(ROE)	3.2	-6.9	3.4	3.6	4.0
투자자본이익률(ROIC)	3.1	2.0	2.3	2.4	2.6
안정성(% 배)					
부채비율	321.5	325.4	328.0	330.7	322.4
순차입금비율	277.5	269.2	256.2	245.8	237.9
이자보상배율(배)	1.3	1.1	1.3	1.3	1.4
활동성(배)					
매출채권회전율	4.0	4.0	4.7	5.9	6.2
재고자산회전율	9.7	14.7	20.3	20.7	20.6
매입채무회전율	11.2	12.2	10.6	10.8	10.7

한전기술 (052690)



Marketperform(Maintain)

주가(6/2) 24,100원

목표주가 26,000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정책 방향이 확인될 때까지 변동성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롭게 원전 폐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국가가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고 해외 경쟁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 진출 여건은 개선된 상황으로 판단된다. 국내보다는 글로벌 원전 시장 변화에 주의할 시점으로 판단하며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정책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Stock Data

KOSPI (6/2)	2,371.72pt	
시가총액	9,211억원	
52주 주가동향	최고가	최저가
	35,500원	22,950원
최고/최저가 대비 등락율	-32.11%	5.01%
주가수익률	절대	상대
1M	0.4%	-6.0%
6M	3.7%	-13.9%
1Y	-16.0%	-29.7%

Company Data

발행주식수	38,220천주
일평균 거래량(3M)	145천주
외국인 지분율	1.08%
배당수익률(17.E)	0.58%
BPS(17.E)	11,195원
주요 주주	한국전력 외 65.78%

Price Trend



해외 원전 시장이 관건

>>> 국내 원전 시장 축소 가능성

새 정부의 원전 정책 확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원전 정책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대선공약과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기반할 때 국내 원전 시장의 장기 전망은 퇴색된 상황이다.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새롭게 원전 폐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모멘텀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해외 원전 시장이 관건

일부 국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달리 원전 건설을 추진중인 국가도 존재한다.

반면 원전 건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국가와 업체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쟁 국가인 미국, 프랑스, 일본은 Toshiba와 Areva는 이슈로 정상적인 원전 건설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원전 수출에 힘을 쏟고 있으나 트랙 레코드 측면에서는 동사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경우 동사가 대부분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한다. 또한 해외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서라도 국내 원전 정책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투자지표	2015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억원)	6,576	5,060	4,807	5,047	5,300
보고영업이익(억원)	347	59	481	505	530
핵심영업이익(억원)	347	59	481	505	530
EBITDA(억원)	501	256	667	685	704
세전이익(억원)	365	234	608	639	668
순이익(억원)	310	178	444	466	507
지배기업주주순이익(억원)	310	178	444	466	507
EPS(원)	812	466	1,162	1,220	1,325
증감율(%YoY)	-43.3	-42.7	149.5	5.1	8.6
PER(배)	42.6	50.8	20.4	19.4	17.8
PBR(배)	3.2	2.1	2.0	1.8	1.6
EV/EBITDA(배)	27.7	38.0	13.6	12.4	11.3
보고영업이익률(%)	5.3	1.2	10.0	10.0	10.0
핵심영업이익률(%)	5.3	1.2	10.0	10.0	10.0
ROE(%)	7.5	4.2	10.0	9.6	9.6
순부채비율(%)	15.7	16.0	0.4	-10.5	-20.2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	6,576	5,060	4,807	5,047	5,300
매출원가	4,960	3,196	3,077	3,230	3,392
매출총이익	1,616	1,864	1,731	1,817	1,908
판매비및일반관리비	1,269	1,804	1,250	1,312	1,378
영업이익(보고)	347	59	481	505	530
영업이익(핵심)	347	59	481	505	530
영업외손익	18	175	127	134	138
이자수익	23	19	18	19	19
배당금수익	0	0	0	0	0
외환이익	83	33	30	30	0
이자비용	5	11	11	11	11
외환손실	76	51	30	30	0
관계기업지분법손익	-47	-22	0	0	0
투자및기타자산처분손익	12	0	0	0	0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3	83	3	3	0
기타	25	124	117	123	129
법인세차감전이익	365	234	608	639	668
법인세비용	55	56	164	173	162
유효법인세세율(%)	15.0%	24.0%	27.0%	27.0%	24.2%
당기순이익	310	178	444	466	507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310	178	444	466	507
EBITDA	501	256	667	685	704
현금순이익(Cash Earnings)	464	374	631	646	680
수정당기순이익	298	115	442	464	507
증감율(% YoY)					
매출액	-21.9	-23.1	-5.0	5.0	5.0
영업이익(보고)	-47.9	-82.9	708.5	5.0	5.0
영업이익(핵심)	-47.9	-82.9	708.5	5.0	5.0
EBITDA	-35.3	-48.9	160.8	2.6	2.8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43.3	-42.7	149.5	5.1	8.6
EPS	-43.3	-42.7	149.5	5.1	8.6
수정순이익	-45.2	-61.4	285.1	5.1	9.1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유동자산	3,416	2,706	3,244	3,908	4,612
현금및현금성자산	153	215	873	1,418	1,998
유동금융자산	75	30	28	30	31
매출채권및유동채권	2,954	2,203	2,092	2,197	2,307
재고자산	0	0	5	5	5
기타유동비금융자산	234	259	246	258	271
비유동자산	5,136	5,160	4,967	4,846	4,734
장기매출채권및비유동채권	214	232	220	231	243
투자자산	458	485	464	484	505
유형자산	3,378	3,281	3,191	3,106	3,024
무형자산	462	573	534	498	465
기타비유동자산	624	590	557	527	498
자산총계	8,552	7,866	8,211	8,754	9,346
유동부채	3,423	2,864	2,827	2,942	3,064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382	1,524	1,447	1,520	1,596
단기차입금	545	618	618	618	618
유동성장기차입금	38	300	300	300	300
기타유동부채	458	423	462	504	550
비유동부채	961	782	763	766	772
장기매입채무및비유동채무	57	111	105	110	116
사채및장기차입금	30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604	672	658	656	656
부채총계	4,384	3,647	3,590	3,708	3,836
자본금	76	76	76	76	76
주식발행초과금	0	0	0	0	0
이익잉여금	4,193	4,244	4,646	5,071	5,535
기타자본	-101	-101	-101	-101	-101
자본총계	4,168	4,219	4,621	5,046	5,511
지분법적용자본총계	4,168	4,219	4,621	5,046	5,511
순차입금	656	674	17	-530	-1,111
총차입금	884	918	918	918	918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영업활동현금흐름	113	187	718	638	674
당기순이익	310	178	444	466	507
감가상각비	107	155	148	144	140
무형감가상각비	47	41	38	36	33
외환손익	0	-4	0	0	0
자산처분손익	12	1	0	0	0
지분법손익	0	0	0	0	0
영업활동자산부채 증감	-789	-779	87	-8	-7
기타	425	595	0	0	0
투자활동현금흐름	-1,349	-76	-3	-49	-52
투자자산의 처분	-309	82	23	-22	-23
유형자산의 처분	17	0	0	0	0
유형자산의 취득	-820	-58	-58	-58	-58
무형자산의 처분	-77	-143	0	0	0
기타	-160	44	33	31	29
재무활동현금흐름	627	-42	-56	-44	-42
단기차입금의 증가	0	0	0	0	0
장기차입금의 증가	845	34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지급	-219	-76	-42	-42	-42
기타	0	0	-14	-2	0
현금및현금성자산순증가	-610	62	659	545	579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763	153	215	873	1,41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53	215	873	1,418	1,998
Gross Cash Flow	902	967	630	646	680
Op Free Cash Flow	-1,237	-740	566	482	510

투자지표

(단위: 원, 배, %)

12월 결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주당지표(원)					
EPS	812	466	1,162	1,220	1,325
BPS	10,905	11,039	12,091	13,202	14,418
주당EBITDA	1,310	669	1,746	1,792	1,841
CFPS	1,215	979	1,650	1,691	1,780
DPS	200	110	110	110	110
주가배수(배)					
PER	42.6	50.8	20.4	19.4	17.8
PBR	3.2	2.1	2.0	1.8	1.6
EV/EBITDA	27.7	38.0	13.6	12.4	11.3
PCFR	28.5	24.1	14.3	14.0	13.3
수익성(%)					
영업이익률(보고)	5.3	1.2	10.0	10.0	10.0
영업이익률(핵심)	5.3	1.2	10.0	10.0	10.0
EBITDA margin	7.6	5.1	13.9	13.6	13.3
순이익률	4.7	3.5	9.2	9.2	9.6
자기자본이익률(ROE)	7.5	4.2	10.0	9.6	9.6
투자자본이익률(ROIC)	8.0	1.0	8.0	8.7	9.8
안정성(% 배)					
부채비율	105.2	86.4	77.7	73.5	69.6
순차입금비율	15.7	16.0	0.4	-10.5	-20.2
이자보상배율(배)	64.0	5.5	44.7	47.0	49.3
활동성(배)					
매출채권회전율	2.3	2.0	2.2	2.4	2.4
재고자산회전율	822,286.8	N/A	2,000.0	1,024.4	1,024.4
매입채무회전율	2.6	2.6	3.2	3.4	3.4

투자의견 변동내역 (2개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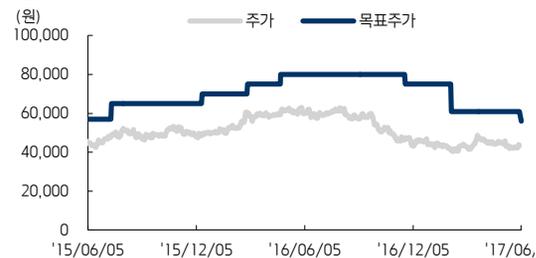
종목명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한국전력 (015760)	2016/08/5	Buy(Maintain)	80,000원
	2016/08/29	Buy(Maintain)	80,000원
	2016/08/29	Buy(Maintain)	80,000원
	2016/10/17	Buy(Maintain)	80,000원
	2016/10/31	Buy(Maintain)	80,000원
	2016/11/04	Buy(Maintain)	80,000원
	2016/11/21	Buy(Maintain)	75,000원
	2016/12/09	Buy(Maintain)	75,000원
	2017/01/11	Buy(Maintain)	75,000원
	2017/02/07	Buy(Maintain)	61,000원
	2017/02/28	Buy(Maintain)	61,000원
	2017/04/06	Buy(Maintain)	61,000원
	2017/05/10	Buy(Maintain)	61,000원
	2017/06/05	Buy(Maintain)	56,000원

종목명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한국가스공사 (036460)	2015/08/13	Buy(Maintain)	54,000원
	2015/11/11	Buy(Maintain)	54,000원
	2016/02/15	Outperform(Downgrade)	42,000원
	2016/03/30	Outperform(Maintain)	42,000원
	2016/05/13	Outperform(Maintain)	46,000원
	2016/05/30	Outperform(Maintain)	46,000원
	2016/07/07	Outperform(Maintain)	46,000원
	2016/08/11	Marketperform(Downgrade)	46,000원
	2016/10/17	Marketperform(Maintain)	46,000원
	2016/11/21	Marketperform(Maintain)	46,000원
	2017/02/15	Marketperform(Maintain)	50,000원
	2017/05/12	Marketperform(Maintain)	50,000원
2017/06/05	Outperform(Upgrade)	58,000원	

종목명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한전기술 (052690)	2015/06/29	Buy(Maintain)	53,000원
	2015/07/28	Outperform(Downgrade)	39,000원
	2015/10/19	Buy(Upgrade)	39,000원
	2015/10/29	Buy(Maintain)	45,000원
	2016/02/15	Outperform(Downgrade)	32,000원
	2016/03/30	Outperform(Maintain)	32,000원
	2016/04/27	Outperform(Maintain)	40,000원
	2016/07/28	Buy(Upgrade)	40,000원
	2016/10/28	Buy(Maintain)	36,000원
	2017/02/14	Marketperform(Downgrade)	28,000원
2017/06/05	Marketperform(Maintain)	26,000원	

목표주가 추이 (2개년)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목표주가 추이 (2개년)

한전기술(052690)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업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 ~ +20% 주가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 ~ -10% 변동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 ~ -10% 주가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 ~ -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6/04/01~2017/03/31)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83	96.32%
중립	7	3.68%
매도	0	0.00%



ONLINE NO.1 KIWOOM SECURITIES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